보낸사람: **신기현 (Kihyun Shin)** <[kihyun.shin@winslaw.co.kr](mailto:kihyun.shin@winslaw.co.kr)>  
Date: 2023년 1월 13일 (금) 오후 1:26  
Subject: RE: [법무법인 윈스] 최예은(노즐리플랜) 님을 대리한 내용증명 발송 알림  
To: Minok Yoon <[minokyoon@gmail.com](mailto:minokyoon@gmail.com)>

윤민옥 님께,

안녕하세요, 신기현 변호사입니다. 최예은(노즐리플랜) 님을 대리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드립니다.

먼저 귀하가 발송한 답변서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, 이후 저희의 추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.

**I. 답변서에 대한 의견**

**1. 최예은 님이 작성한 글이 저작권법 위반이고, 이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인정하였다는 주장 관련**

-귀하는 ‘귀하 작성글과 최예은 님 작성글에 유사한 표현이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’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 그러나 저작권 침해 여부는 유사한 표현이 있는지를 기계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, **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표현**이 상호 유사한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. 따라서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(주제, 소재 채택 등)만 유사하다거나, 창작성이 없는 표현 부분만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침해가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. 실제로 **법원에서도 다른 회사의 IR자료(홍보자료) 표현을 거의 그대로 사용한 사안에서, IR자료에 기재된 표현에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저작권 침해를 부정**하였습니다(첨부 판례, 대법원에서도 확정).

-한편 본 변호사가 한국저작권위원회 이근화님께 직접 전화를 하여 문의를 한 바에 따르면, ‘저작권위원회는 신청인 일방의 자료 및 주장만을 참고하여 단순 의견을 줄 뿐이고, 어떠한 공신력 있는 해석이나 유권해석을 내리지는 않는다’는 답변을 받았습니다. 실제로 귀하가 첨부한 저작권위원회의 답변에는 ‘내용이 유사하다’는 것만을 근거로 들고 있을 뿐, 귀하의 글 중 어느 표현이 어떻게 창작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**2. 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위반이라는 주장 관련**

-해당 조항은 데이터부정사용행위에 관한 조항이므로, 본건과는 무관한 조항으로 보입니다.

**3. 공갈미수와 무고 관련**

-귀하는 ‘고소를 진행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라’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 고소는 죄가 있는 사람을 형사사법 절차에 따라 처벌해달라는 요청인데, 고소 여부에 대하여 금전 지급의 조건을 붙이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한 것이어서 피고소인이 죄가 되든 되지 않든 그와 같은 요구를 하는 것은 당연히 공갈미수에 해당합니다. 이에 대해서는 이론(異論)의 여지가 없으니 더 이상 반박하지 않겠습니다.

-한편 귀하는 무고에 관한 주장도 하고 있으나, 무고는 공무소 등에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서 본건과 무관합니다.

**4. 최예은 님의 사과 관련**

-최예은 님은 귀하가 본건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거나 불가피하게 소요한 시간 등이 있을 것이라 추측하여, 도의적 차원에서 사과를 드리면서 법적 다툼이 불거지는 것을 원치 않으니 합의금 조로 금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. 그러나 이를 들어 최예은 님이 법률 위반 사실을 인정하거나 자백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.

**II. 추가 의견**

저희는 귀하가 본건으로 인해 겪었을 심려를 헤아려, 여전히 도의적인 차원에서 충분한 사과를 드리고 싶은 의향이 있습니다.

그러나 저희는 **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저희의 책임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.** 귀하는 몇 가지 근거를 들며 최예은 님이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, 이는 모두 근거가 부족하거나 선례가 없어 설득력이 없는 주장들입니다. 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귀하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.

본 의견은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답변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

법무법인 윈스  
**파트너변호사 신기현**

서울 강남구 삼성로 566, 2층(삼성동, 빌딩엠)  
Tel. 010-6437-7343, 02-556-6800, Fax. 02-556-6809  
  
본 이메일과 첨부 파일은 지정된 수신인만을 위해 발송되었으며, 법적으로 보호받는 기밀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 
만일 귀하께서 지정된 수신인이 아닌 경우, 본 이메일을 열람하거나 복사, 배포 및 사용할 수 없습니다.  
그러므로 본 이메일이 잘못 수신된 경우 즉시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, 본 이메일과 파일 및 그 복사본을 영구히 삭제하고 그 출력물을 파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